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 439

提出年月日: 1994. 5. .

提 出 者:大田直轄市長

1. 提 案 理 由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의안을 검토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 좌하는 전문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의회 사무처 의 정원을 보강하고자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수를 변경하고 자함.

2. 主要骨子

○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51명"에서 "54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4조)

3. 參考事項

- 가. 의회사무처 정원보강안
 - 행정 6급 3명 보강
 - 업무량이 많은 내무, 문교사회,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보조직원
- 나. 현재 의회사무처 기구 및 정원현황
 - 기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

· 정 원 : 51명 (3급1, 4급7, 5급8, 6급6, 7급9, 별정1, 기능19)

다. 타 직할시와의 비교

	의	회		의	회	시	-	무	처			
시 별	ما ما	상 임	-1 -7		る	}				원		
	의 원	위원회	기 구	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직
대 전	23	5	2담당관 6계	51		1	7	8	6	10		19
광 주	23	5	2담당관 6계	51		1	7	8	6	10		19
인 천	27	5	2담당관 6계	55		1	7	8	6	12	1	20
대구	28	5	2담당관 6계	53		1	7	8	6	10		21
부 산	51	7	2담당관 6계	64	1		9	8	6	17		23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51명"을 "54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무직원의 경	j수) 사무처에 두는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사무직원의 정수는	: <u>51명</u> 으로 하며,	a	54명	
직급별 정원은 대	전직할시 지방공무원	4		
정원규칙으로 정한	날다.			•
부	칙	부		착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 시행한다